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3호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2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공	고 제 2 2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8
○ 공	고 제 2 3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73
○ 공	고 제 2 3 1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81
○ 공	고 제 2 3 4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87
○ 공	고 제 2 3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9
○ 공	고 제 2 3 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냉정지구 소2-1호선】 공사완료 공고	96
○ 공	고 제 2 3 9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남동구 남동대로915번길 53(간석동)]	97
○ 공	고 제 2 4 0 호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98
○ 공	고 제 2 6 2 호	2018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99
○ 공	고 제 2 6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103
○ 공	고 제 2 7 0 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함박외로 383,인주대로 751번길 17]	122
○ 공	고 제 2 7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3
○ 공	고 제 2 8 5 호	2018년 2월 취득세 공시송달	130
○ 공	고 제 2 9 3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32

고 시

○ 고	시 제 1 4 호	도로명주소 고시	134
○ 고	시 제 1 7 호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37
○ 고	시 제 1 8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남동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사업 실시계획 고시	143
○ 고	시 제 1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145
○ 고	시 제 2 0 호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취소	147

○ 고	시 제 2 1 호	간석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추진위원회승인) 취소 고시	 148
○ 고	시 제 2 2 호	간석초교주변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인가 취소 고시	 149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5291호, '17.12.26)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함.
-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함. (조례명)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안 제7조)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7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 ~ 안 제26조)

- 납세자 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453-2360, FAX 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4. 납세자권리 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발굴
6.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화·법령자문 또는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요청 사무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無理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자 권리헌장

제27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① 구청장·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8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1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 제32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4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9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3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2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1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칙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2조)
-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 안 제24조)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453-2360, FAX 453-23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간 연기신청) 조례 제20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기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 접수사실 통보 및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세무부서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 만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〇〇.〇〇.〇〇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 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신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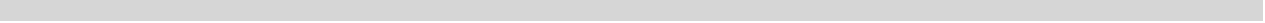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22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frac{11}{E}.$$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m²)

■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결정 통보
[] 체납처분유예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년월	세목 세액
			계	

$$\frac{11}{E}.$$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처리 결과 통보
 [] 체납처분유예

「남동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비 고			
1회							
2회							
3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월2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신설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 노후·고장 및 안정상의 이유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 제18조의3 신설)
 - ①항: 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에 한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2분의 1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 적용
 - ②항: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2685, FAX 453-2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후 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에 한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적용 (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 본 문

☐ 신·구조문 대비표

☐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2단식, 다단식에 한함)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2단식, 다단식에 한함)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3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8. 1.29. ~ 3. 1.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18. 3. 1.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너1124 외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16-507	**너1124	포르테 쿵	이*호	남동구 구월동 1370-4 황소야 앞 주차라인 내	16.09.09.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16-790	**라5891	토스카	임*민	남동구 구월3동 1118-19번지 인광빌라 앞 주차구역	16.12.23.	기전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17-00630	**너8052	SM5	이*업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 (길병원주차장근방)	17.11.28.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17-00645	**서1284	SM7	전*옥	남동구 간석동 612-2 스카ิโอ피스텔 주차장 1층	17.11.28.	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너 1124	포르테 쿵	승용 중형	이*호	7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 천로 *(양정동)	압류	서울 서초구[2011-07-103716]	2011.12.13	주차관리과-31033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서울 서초구	2012.01.12	주차관리과-1006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8-104301]
						압류	서울 서초구	2012.06.04	주차관리과-13980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1-104440]
						압류	서울 서초구	2012.06.05	주차관리과-13980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1-110113]
						압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2012.10.16	차등-28365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120601079738)
						압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2012.10.16	차등-28365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120601079737)
						압류	서울 동작구	2013.01.10	교통지도과-666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12-09-100070]
						압류	서울 서초구	2013.02.13	주차관리과-2830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9-105987]
						압류	서울 서초구	2013.02.13	주차관리과-2830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9-109652]
						압류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2014.09.18	팔달구세무과-140917	지방세 체납
						저당	(주)오리온캐피탈대부 : 1124-2012-017297 *저당을부번호	2012.12.17	9,100,000	
						압류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2014.11.19	교통안전과-2707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14-07-101329)
						압류	수원중부경찰서	2014.11.28	2014D130502338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30570140594901)
						압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2014.12.04	차량등록사업소-34413	의무보험과태료(20141001083371)
						압류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2014.12.04	차량등록사업소-34413	의무보험과태료(20141001083372)
						압류	서울 중구	2014.12.12	주차관리과-35170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8-104924]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2015.05.11	교통민원과-21872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2-000500)
						압류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2016.02.18	차량-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체납압류(20151109004436)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4.18	교통행정과-10024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1-002202)
						압류	서울 마포구	2016.05.10	교통지도과-15014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1-101254]
						압류	부산광역시 북구	2016.09.06	세무과-18951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
						압류	구미시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징수계	2016.12.09	세무과-28218	검사지연과태료(20151109004436)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라 5891	토스카	승용 중형	임*민	8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오리나루*길 *~**	저당	우리파이낸셜(주) *저당을부번호 : 4111-2011-005210	2011.03.15	10,000,000	
						압류	강릉경찰서	2011.04.21	교통63310-000074	과태료 체납(140370100223796,03주2624)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TEL)033)640-5388	2011.07.11	교통행정-28238	책임보험과태료 (₩10620)고지:201105 001173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TEL)033)640-5388	2011.07.11	교통행정-28238	책임보험과태료 (₩5310)고지:201105 001174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1.07.12	교통행정과-28238	책임보험 (201105 000062) 03주2624대체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1.07.12	교통행정과-28238	책임보험 (201105 000063) 03주2624대체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TEL)033)640-5388	2011.09.09	교통행정-38320	책임보험과태료 (₩27610)고지:201107 000703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TEL)033)640-5388	2011.09.09	교통행정-38320	책임보험과태료 (₩13800)고지:201107 000704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TEL)033)640-5388	2011.12.10	교통행정-53693	책임보험과태료 (₩10620)고지:201110 000120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TEL)033)640-5388	2011.12.10	교통행정-53693	책임보험과태료 (₩5310)고지:201110 000121
						압류	강릉경찰서	2011.12.16	2011D140301092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40370110114895)
						압류	강릉시청	2012.03.07	강릉시 세정과-45	지방세체납처분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2.04.09	교통행정-7078	책임보험(20120217004735)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2.04.09	교통행정-7078	책임보험(20120217004734)
						압류	강릉경찰서	2012.05.22	2012D140300469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40370110335107)
						압류	강릉경찰서	2012.06.05	2012D140300505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40370110321843)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2.09.10	교통행정과-34753	의무보험(20120709010466)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2.09.10	교통행정과-34753	의무보험(20120709010465)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2.10.09	교통행정과-39721	검사지연(20120807001521)
						압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3.01.08	건설교통과-622	주정차위반 (2012-028101 ₩)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3.05.13	교통행정과-25536	의무보험(20130308002711)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3.05.13	교통행정과-25536	의무보험(20130308002712)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4.03.12	교통행정과-12112	책임보험(20140107000181)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4.03.12	교통행정과-12112	책임보험(20140107000182)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4.09.15	교통행정과-12743	책임보험(20140609007899)
						압류	강릉시 교통행정과 033-640-5388	2014.09.15	교통행정과-12743	책임보험(20140609007900)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2014.11.07	교통민원과-3619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8-001775)
						압류	인천 서구청주차관리과	2014.11.11	주차관리과-23968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7-002209)
						압류	인천 서구청주차관리과	2015.01.13	주차관리과-967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9-001364)
						압류	충청남도 당진시	2015.02.05	교통과-5363	주정차위반 (2014-005623 ₩)
						압류	충청남도 당진시	2015.02.05	교통과-5363	주정차위반 (2014-005649 ₩)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5.08.07	주차지도과-14400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5-007027)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6.01.15	교통행정과-1234	주정차위반과태료(2015-10-003472)
						압류	강릉시청 교통과	2017.11.27	교통과-89135	검사지연과태료(20120807003610)
						영치	인천 남동구	2017.02.10		보관장소:강릉시 징수과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삭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너 8052	SM5	승용 형	이*업	53**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번길 **-(주안동)	압류	인천남부경찰서	2013.03.11	2013D230300394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370120769894)
						압류	인천남부경찰서	2013.03.11	2013D230300440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370120741119)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3.03.12	교통행정과-561	주정차위반과태료(2012-12-004357)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	2013.10.11	교통민원과-559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체납(2013-12982)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	2013.10.11	교통민원과-559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체납(2013-12983)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2013.12.27	주차관리팀-28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534)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교통민원과	2014.01.08	교통민원과-1038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0-00102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5.13	자동차관리과-24191	자동차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체납 압류(000532-0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2014.07.25	징수부-4599	건강(요양), 연금, 고용, 산재보험, 체납액(건강:319820연금:0 고용:0산재:0)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교통민원과	2014.08.07	교통민원과-41284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5-000773)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2014.10.23	주차관리팀-236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1-19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2014.11.07	교통민원과-9194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40812016745)
						저당	비에스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11-2012-006147	2012.04.06	12,500,00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	2014.11.07	교통민원과-9194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4081201674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2015.03.12	세무2과-4027	지방세 체납(032-880-4200)
						압류	인천 남구청교통민원과	2015.04.09	교통민원과-15883	주정차위반과태료(2015-01-00198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5.04.13	교통민원과-16409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50112004314)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5.04.13	교통민원과-16409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50112004315)
						압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04.21	주차사업팀-1044	공영주차장요금체납(2015-293)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2015.09.14	세무2과-14745	지방세 체납(032-880-420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5.10.06	교통민원과-48889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50709013308)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5.10.06	교통민원과-48889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50709013309)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2015.10.06	주차관리팀-303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440)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2016.03.16	세무2과-4596	지방세 체납
						압류	인천남부경찰서	2016.03.24	2016D230300721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370151474021)
						압류	인천남부경찰서	2016.06.02	2016D230301192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370160122851)
						압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2016.07.07	경제교통과-22347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20160112008448)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2016.09.29	세무2과-16224	지방세 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2017.03.24	세무2과-4329	지방세 체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7.04.07	자동차관리과-11131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70112025018)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7.04.07	자동차관리과-11131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70112025019)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7.04.07	자동차관리과-11131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70112026052)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7.04.07	자동차관리과-11131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70112026053)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7.10.16	자동차관리과-60803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70711035766)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7.10.16	자동차관리과-60803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20170711035767)
						영치	인천광역시 남세협력담당관	2017.01.23		인천광역시 번호판영치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주	생년 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서 1284	SM7	승용 대형	전*옥	6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 대로 ***, ***동 ****호 (간석동, *****아파텔)	저당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저당을부번호 : 2820-2009-002386	2009.05.22	14,000,0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09.11.23	자동차관리과=44611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013645-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09.11.23	자동차관리과=44611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013646-0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2010.01.14	징수부-80	채납처분에의한압류()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02.19	경비교통과-001175	도로교통법위반(200972305038133)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02.19	경비교통과-001175	도로교통법위반(200972305032700)
						압류	인천남동구청	2010.03.10	세무1과-4814	지방세체납()
						압류	남구청교통민원과91000	2010.04.26	교통민원과91000-18195	주정차위반과태료(2009-12-000802)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0.12.22	경비교통과-101222	과태료 체납(고지번호:230570100305617)(대체 :)
						압류	남동구청	2011.10.11	자동차관리과-39126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2064)
						압류	남동구청	2011.10.11	자동차관리과-39126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2065)
						압류	인천남동경찰서	2012.06.07	2012D230501594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57011057652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2.10.31	자동차관리과-49042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18818-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2.10.31	자동차관리과-49042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18819-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4.03.10	세무1과	지방세 체납
						압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2014.04.08	자동차관리과-17834	자동차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체납 압류(005819-00)
						영치	세무과	2013.06.13	홍철호	세무과-1551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4.04.16	보험급여부-2812	건강부당이득금(8736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4.16	자동차관리과-19728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4204-00)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4.04.16	자동차관리과-19728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004205-0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6.11.09	보험급여부-5811	건강부당이득금(1762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3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8. 1.29. ~ 2.13.
2. 강제처리(폐차) 일시: 2018. 2.13.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러9648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의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5)

무단 방치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역

연번	차량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생년월일	대상자주소	지당등록내역	지당권 설정자	주소	방치장소
559	**러9648	레간자	승용 중형	김*구(진성상 사:상품용)	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번길 ***(반여동)	을부번호:2601-2003-064036 설정일자:2003.1.15.	유*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아파 트 *-****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56, 폐 차장 내
							을부번호:2601-2005-038594 설정일자:2005.5.25.	최*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번 지 *호 *****APT.*-***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남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노인일자리 지원기관)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맞추어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안 제9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관련 법령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5852, FAX 453-58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추어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안 제9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관련 법령 내용 반영

☐ 본 문

☐ 신 · 구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2 제3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라고 하고, “다음 회계연도”를 “다음 사업연도”라고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 회계연도 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 -----.
②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 회계 연 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 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다음 사업연도-----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15., 2011.5.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법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전자적 지원
4.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
7. 사회복지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③ 전담기구의 장은 제2항의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사업 실적과 예산·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기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3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냉정지구 소2-1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6-76호(2016.7.14.)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냉정지구 소2-1호선】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 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14(수산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냉정지구 소2-1호선)
 - 명칭: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2-1호선 B=8.0m, L=393.0m(총 912.0m 중)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공사완료일: 2017.12.1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3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 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1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폐업장소

소매인 구분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폐업일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2항)	인천.남동구 남동대로 915번길 53, 1층(간석동)	(주)코리아세븐 인천간석경인점	남동구2003-00161 (2003-07-01)	2018.1.30.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3항-2017.3.7. 일부개정)

- 공고기간: 2018. 1. 30. ~ 2018. 2. 7.
- 신청기간: 2018. 1. 30. ~ 2018. 2. 7. 18: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정방법: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 유선통보)
-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등록기준지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적법 건축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위법사항이 없어야 함

- 접수처: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문의전화 032-453-6123)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제1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1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고기간 : 2018. 01. 30. ~ 2018. 02. 14. (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 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2. 당사자 (매수인)	성명(명칭)	송 * 주(730228-*****)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90-15,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7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4. 처 분 내 용		부동산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 금액 금 181,370원 - 자진납부시 20% 경감 금 145,090원
5.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대상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99 **동 ****호
6. 법 적 근 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7. 기 타 (문 의 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연 락 처	032-453-247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62호

공 시 송 달

성명: 김**희 외 62

서류의 명칭: 2018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18.2.1.일을 2018.2.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 내 금융기관 및 전자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2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40002 2018 01 2 540 000016	390120-*****	김**희	예정신고분	2,792,340	기타
2	140002 2018 01 2 581 000021	690818-*****	이**학	예정신고분	449,370	
3	140003 2018 01 2 510 000031	121111-*****	세**환**관**(주)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7,935,490	기타
4	140003 2018 01 2 521 000010	120111-*****	(주)현**중**개**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9,896,790	이사감
5	140003 2018 01 2 521 000023	120111-*****	(주)현**중**개**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53,300,250	이사감
6	140003 2018 01 2 521 000070	120111-*****	(주)현**중**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407,000	이사감
7	140003 2018 01 2 530 000037	131826-*****	대**효**천**민**동**부	2013년 귀속 법인소득세	292,8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8	140003 2018 01 2 530 000038	131826-*****	대**효**천**민**동**부	2012년 귀속 법인소득세	642,340	기타
9	140003 2018 01 2 560 000033	120111-*****	가**석**무**(주)	2013년 귀속 법인소득세	368,020	기타
10	140003 2018 01 2 690 000013	120111-*****	주**회**광**토**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601,610	기타
11	140003 2018 01 2 700 000019	120111-*****	주**회**협**에**앤**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2,032,260	기타
12	140003 2018 01 2 800 000007	120111-*****	(주)엠**코**아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484,140	기타
13	140003 2018 01 2 800 000028	120111-*****	씨**디**플**이**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680,970	기타
14	140004 2018 01 2 510 000090	120111-*****	주**회**코**아**듀**퍼**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22,9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5	140004 2018 01 2 510 000305	460906-*****	최**연	2017년09월귀속분 :기타소득	13,260	
16	140004 2018 01 2 510 000343	120111-*****	(주)인**니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8,360	이사감
17	140004 2018 01 2 510 000442	120111-*****	주**회** **산**웃**싱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0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8	140004 2018 01 2 510 000590	850915-*****	V* *H* *U*E* *R*M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9,3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9	140004 2018 01 2 510 000872	840418-*****	김**진	2017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25,070	기타
20	140004 2018 01 2 510 000936	121111-*****	주**회**동**라**	2017년08월귀속분 :사업소득	158,580	기타
21	140004 2018 01 2 510 001044	120111-*****	마**네**워**	2017년08월귀속분 :사업소득	5,3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2	140004 2018 01 2 510 001045	120111-*****	마**네**워**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1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3	140004 2018 01 2 520 000762	800121-*****	이**규	2017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8,2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4	140004 2018 01 2 521 000102	590125-*****	박**용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5,740	이사감
25	140004 2018 01 2 521 000518	761112-*****	박**영	2017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14,280	기타
26	140004 2018 01 2 522 000713	651128-*****	오**교	2017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12,3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7	140004 2018 01 2 522 000714	651128-*****	오**교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7,8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8	140004 2018 01 2 530 001026	691201-*****	박**석	2017년08월귀속분 :사업소득	22,2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9	140004 2018 01 2 550 000781	681006-*****	신**희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6,2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0	140004 2018 01 2 550 001048	120111-*****	주**회** **람**리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22,2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1	140004 2018 01 2 551 000689	120151-*****	협**조**벗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1,520	기타
32	140004 2018 01 2 551 000850	660721-*****	정**영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3,5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3	140004 2018 01 2 583 000295	120111-*****	햇**산**개**(주)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64,140	이사감
34	140004 2018 01 2 660 000525	810228-*****	김**은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2,050	기타
35	140004 2018 01 2 690 000126	285011-*****	주**회**모**존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35,410	
36	140004 2018 01 2 690 000842	120111-*****	(주)신**렌**가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80,800	이사감
37	140004 2018 01 2 700 000647	110111-*****	에**에**건**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7,0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8	140004 2018 01 2 700 000814	120111-*****	주**회**다**라**프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20,320	이사감
39	140004 2018 01 2 710 000181	730901-*****	윤**옥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3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0	140004 2018 01 2 710 000422	120111-*****	(주)경**축**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1,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1	140004 2018 01 2 710 000432	120111-*****	(주)골**알**디	2017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74,260	이사감
42	140004 2018 01 2 710 000433	120111-*****	(주)골**알**디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01,380	이사감
43	140004 2018 01 2 710 000574	135511-*****	주**회** **리**에**마**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58,8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4	140004 2018 01 2 710 000829	170111-*****	이**세**식**사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66,870	이사감
45	140004 2018 01 2 710 000831	171311-*****	다**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1,220	이사감
46	140004 2018 01 2 710 000849	120111-*****	주**회**선**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42,8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7	140004 2018 01 2 800 000004	135511-*****	(주)더**빙	2017년09월귀속: 근로소득	592,190	이사감
48	140004 2018 01 2 800 000214	740316-*****	이**선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6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9	140004 2018 01 2 800 000239	801226-*****	정**택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0	140004 2018 01 2 800 000324	120111-*****	(주)해**특**금**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70,1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1	140004 2018 01 2 800 000347	120111-*****	(주)티**이**지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3,4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2	140004 2018 01 2 800 000369	120111-*****	(주)지**개**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57,870	이사감
53	140004 2018 01 2 800 000413	120111-*****	주**회** **원**밀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3,5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4	140004 2018 01 2 800 000577	134911-*****	원**산**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4,5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5	140004 2018 01 2 800 000581	134511-*****	제**에**치**스**식**사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365,340	기타
56	140004 2018 01 2 800 000632	690903-*****	신**용	2017년08월귀속분 :사업소득	25,7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7	140004 2018 01 2 800 000633	690903-*****	신**용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3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8	140004 2018 01 2 800 000692	490117-*****	한**선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4,5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9	140004 2018 01 2 800 000701	120111-*****	지**스**스**틱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5,9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0	140004 2018 01 2 800 000710	120111-*****	주**회**파**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72,4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1	140004 2018 01 2 800 000747	120111-*****	씨**이**	2017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6,3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2	140004 2018 01 2 800 000965	840531-*****	김**라	2017년08월귀속분 :사업소득	37,2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3	140004 2018 01 2 800 000996	120111-*****	에**	2017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9,2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월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사유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상위법령 근거조항 명시 및 개정사항 반영 (안 제4조, 제30조, 제39조)
- 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31조, 제65조)
- 다.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의 명확화 (안 제2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9조, 제62조, 제6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재무과)/전화453-2272, FAX453-22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을 “총괄재산관리관을”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나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27조제3항제3호 본문 중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지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1호부터 5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후단의 산식을 삭제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를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각각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전단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각각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 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제4호 중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를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2조의2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속된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계약 및 허가의 갱신 전까지는 기존의 사용료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u>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u> 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u>총괄재산관리관을</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 --
<u>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u>	<u>나. ----- 1억원 -----</u> --
<u><신 설></u>	<u>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업인</u>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주거용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

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

상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④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 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

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

리 협의된 재산.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경우.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지평가액-----

-----.

1. ~5. (삭 제)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
 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
 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④ -----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토지]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토지·건물]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사용하는 면적

[건물]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토지]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일부개정 2013. 1 2. 27.)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

-.<산식삭제>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항 및 12항-----

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③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 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65퍼센트

-----.

1. -----

-----.

가. -----

-----기
획재정부장관-----

나. ~ 사.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삭제>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1.~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1.~ 3. (현행과 같음)

③ -----

-----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7. 5. 10.)

1. ~ 4. (생략)

<신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7. 5. 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7. 5. 10.)

1. ~ 4. (생략)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

③ -----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 -----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 6. 19.)(전항개정 2013. 12. 27.)(일부개정 2017. 5. 10.)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5. 10.)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7.)(일부개정 2017. 5.

④ (현행과 같음)

⑤ -----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

② -----

-----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0.)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2. 27, 전부개정 2016. 3. 11.)

1. (생략)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5. 6. (생략)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현행과 같음)

2. -----

-----매
각하는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4. -----

----- 경우.

5. 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별표3]
-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31조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없 음”

관 련 자 료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 12. 29.)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토지의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후략)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신규로 감면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 회계 간 이관 및 대부(사용)료
 -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 나. 일반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산정한 건물의 공용면적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퍼센트를 적용하고,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건물가액(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부지가액(면적) =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7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2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폐업장소

소매인 구분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지정번호 (지정일자)	폐업일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3항)	인천.남동구 남동대로 함박외로 383(남촌동)	남 촌 크로바푸드	남동구2010-00129 (2010-07-08)	2018.2.1.
일반소매인 (제7조의3제2항)	인천.남동구 인주대로 751번길 17,101호(구월동)	소망미니마트	남동구2017-00095 (2017-06-01)	2018.2.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3항-2017.3.7. 일부개정)

- 공고기간: 2018. 2. 1. ~ 2018. 2. 9.
- 신청기간: 2018. 2. 1. ~ 2018. 2. 9. 18:00까지(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정방법: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 유선통보)
-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등록기준지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적법 건축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위법사항이 없어야 함

- 접수처: 남동구청 7층 생활경제과(문의전화 032-453-6123)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제1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3항을 준용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2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통·반의 획정기준 완화(안 제3조제1호,제2호)
- 반장 위촉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
-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자 중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 통·반장의 임무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제7호)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신설
 -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위민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962, FAX 453-22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반의 획정기준 완화 : (안 제3조제1호,제2호)
- 반장 위촉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 : (안 제13조제3항)
-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 개정 : (안 제5조제2항제1호)
- 통·반장의 임무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제7호)

☐ 본 문☐ 신·구조문 대비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일반주택은 30내지 60세대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세대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를 “30내지 10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학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호 중 “4~10개반으로 구성하며, 세대수는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를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다만,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항제1호 중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제8조의2 중 “개최하고 반장이”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u>일반주택은 30내지 60세 대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세대 구성한다.</u> 다만, <u>자연부락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u> 2. 통은 <u>4~10개반으로 구성하며, 세 대수는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제3조(확정기준) ----- ----- 1. 반은 <u>30내지 100세대로 구성 한다.</u> 다만, <u>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 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u> 2. 통은 <u>2~8개반으로 구성한다.</u> <u>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u>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u>반에 반장을 둔다.</u> ② (생 략)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5 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역사회에 헌 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 촉한다. <신 설> 2.~4. (생략) ③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u>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1. ----- ----- ----- ----- ----- <u>다만,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 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u> 2.~4. (현행과 같음) ③----- -----

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
에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통·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신 설>

2.~10. (생략)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5. (생략)

<신 설>

6. (생략)

제8조의2(반상회) 통·반장은 매월 정기
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
최할 수 있다.

-----, -----

-----.

1. -----
--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0.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

-----.

1.~5. (현행과 같음)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
원

8.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반상회) -----
----- 개최할 수 있으며, -----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85호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명: 이**현 외 7건

서류의 명칭: 2017년 11월 독촉 및 18년 1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류의 내용: 2017년 11월 독촉 및 18년 1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8.1.31.을 2018.2.28.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득세 2018년 1월 수시분 및 2017년 11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개인 (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자 주소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이**현	6310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17번길 6-6 (장안동)	101501-2017-11-2-580-064749	수취인미거주	270,890
2	취득세	박**경	720110-*****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91번길 21, 204호 (도마동, 럭키도마아파트상가)	101501-2017-11-2-580-064768	수취인미거주	636,930
3	취득세	이**훈	51022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23번길 27, 101동 504호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101501-2017-11-2-530-064801	수취인미거주	1,249,530
4	취득세	김**순	3912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38번길 1, 502호 (만수동, 삼일아파트)	101501-2018-01-2-560-000303	수취인미거주	1,400,800
5	취득세	박**빈	9510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27, 2동 301호 (만수동, 대흥빌라)	101501-2018-01-2-580-000468	수취인미거주	793,330
6	취득세	박**빈	9510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27, 2동 301호 (만수동, 대흥빌라)	101501-2018-01-2-510-000469	수취인미거주	782,910
7	취득세	김**득	9302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로32번길 26, 101호 (만수동, 해성빌라)	101501-2018-01-2-581-000471	수취인미거주	781,990
8	취득세	지**환	9303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89번길 18-6, 가동 302호 (구월동, 전일빌라)	101501-2018-01-2-522-000507	수취인미거주	739,74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293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7항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의 내용 : 휴폐업 사실 미통보 2차 위반
2. 공고기간 : 2018. 02. 02.(금) - 2018. 02. 21.(수) (20일간)
3. 행정처분 대상 업체

상호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처분 내용	처분 일자
(주)유니젼여행사	국내여행업 (제2008-5호)	김○라	미래로 21, ***호 (구월동, SR노빌리안2)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1
(주)유니젼여행사	국외여행업 (제2007-6호)	김○라	미래로 21, ***호 (구월동, SR노빌리안2)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1
깨비여행사	국내여행업 (제2012-5호)	박○근	만수서로105번길48,*동***호(만수동,정광아파트)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1
케이비투어	국외여행업 (제2013-3호)	박○근	미래로 21, ***호(구월동,노빌리안2차)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2
(주)에스엠아이앤씨	국내여행업 (제2013-3호)	김○범	경인로 611,*동***호(간석동,오피앙 오피스텔)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2
(주)에스엠아이앤씨	국외여행업 (제2013-6호)	김○범	경인로 611,*동***호(간석동,오피앙 오피스텔)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2
(주)포에버	국내여행업 (제2007-1호)	김○호	예술로 198, 지하3층(구월동,홈플러스)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2
(주)마실관광	일반여행업 (제2010-1호)	양○기	남동서로53번길 38(고잔동)	휴폐업사실 미통보 2차	취소	2018.02.02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032-453-2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번길 70 외 8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88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란(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란 (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 번길	70	2009. 11.16.	만월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0m지점에 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북로112번길 70 기초구간에위치하여70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88- 1	2009. 11.16.	만월로의 북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 명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월북로 88-1 기초구간에위치하여88-1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54	2009. 11.16.	행정구역명(간석동)을 이용하여 간석로로 제명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간석로 54 기초구간에위치하여54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35- 23	2009. 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4번길 35-23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23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1-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28	2009. 07.06.	고려시대 인천의 이름인 인주를 인용하여 제명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 528 기초구간에위치하여528를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3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71	2009. 11.16.	인근에 소래포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여 제명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포구로 71 기초구간에위치하여71를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5-1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 번길	11- 10	2009. 11.16.	앵고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20m지점에 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941번길 11-10 기초구간에위치하여11-10를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6-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70 번길	37	2009. 11.16.	구월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0m지점에 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말로70번길 37 기초구간에위치하여37를건물번호로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2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69	2009. 11.16.	음실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8. 01.2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음실로 69 기초구간에위치하여69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112번길	70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88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88-1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54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54-1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54-2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35-21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35-23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3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71	2018.01.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7호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7년 3월 8일 자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3 (구월동 341-10)
 - 나. 면적 : 3,087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법인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3, 4동 101호
 - 다. 대표자 성명 : 오양석
 - 라. 대표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12-3, 3동 206호 (구월동 우정아파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8년 1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
3,087㎡	22.0813%	375.572%	지하3층 ~ 지상26층	공동주택, 오피스텔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세대수	비고
59.9154㎡ (59A형)	78	아파트
59.933㎡ (59B형)	19	
84.9631㎡ (84A형)	26	오피스텔
84.0085㎡ (84B형)	7	
계	130	

9.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하고 토지 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권리소재지	토지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목	면 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 용	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고기봉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고기봉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2호	근저 당권	중소 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79 (을지로2가)(구월동지점)	107,040
사 용	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2,521.05	2,521.0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3,862.14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강형섭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강형섭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1호	근저 당권	신한은행	서울 중구태평로2가 120번지(구월동지점)	72,000
	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선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선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2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신만수지점	30,000
	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노문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노문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3호	근저 당권	인천도시 개발공사	인천남동구간석동67-2	10,950
	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배은숙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배은숙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4호				
	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황윤성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5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황윤성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5호	근저 당권	신한은행	서울 중구태평로2가 120번지(구월힐스캐슬지 점)	84,000
	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최쌍금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6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최쌍금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6호	근저 당권	신한은행	서울 중구태평로2가 120번지(가좌동지점)	120,000
	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배상수 김철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7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배상수 김철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7호				
	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황점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8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황점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108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신만수지점	3,6000
	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인엽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이인엽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1호	근저 당권	우리은행	서울중구소공로 51 (회원동 1가) 남동클러스트지점	68,420
	1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최정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최정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3호				
	1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장훈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장훈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4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신만수지점	42,000
	1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우혜숙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5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노상순	인천남구경원대로746 (주안동)				
	1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오양석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6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오양석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6호				
1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광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7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광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7호					

1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상율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8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상율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208호				
1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서해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서해순	인천남동구만수동905호 성상아맨션7동1508호				
1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노순국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노순국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2호				
1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진성민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진성민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3호	근저 당권 근저 당권 가압류 압류	국민은행 인천신용 보증재단 한국 장학재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남인천 세무서 인천광역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간석동지점) 인천남동구남동대로215 번길 30, 9층(남동지점) 서울중구통일로10,19층(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 스빌딩)	122,400 21,600
1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정은옥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정은옥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4호	근저 당권	구월남촌새 마을금고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5	13,000
2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길운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5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길운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5호	근저 당권	인천도시 개발공사	인천남동구간석동67-2	19,050
2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박옥선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6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박옥선	인천부평구경원대로1269, 110동601호(산곡동현대 @)				
2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설수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7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유정숙	아산시 문화로257-20, 105동1102호(권곡동, 서해그랑블아파트1차)				
2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유영덕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8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유영덕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308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신만수지점	24,000
2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유근옥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유근옥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1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신만수지점	42,000
2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명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명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2호	근저 당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임학동지점)	110,400
2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박선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박선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3호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인천도시 개발공사 구자수	인천남동구간석동67-2 인천남동구만수동1042광명 @106-1007	10,950 45,000
2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곽미옥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곽미옥	인천남동구서창동572- 6 삼성탑스빌 301				
2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선동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5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선동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5호	근저 당권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여의나루로5 7(여의도동, 신송센터)	118,800
2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남상길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6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남상길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6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장승로 28(만수동)신만수지점	100,500

3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의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7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이의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7호	근저 당권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서울중로구공평동100 (소매여신운영부)	72,000
3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 린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8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 린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408호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인천도시 개발공사 신한은행	인천남동구간석동67-2 (태평로2가)남동구청지점	10,950 60,000
3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노상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노상순	인천남동구경원대로746 (주안동)				
3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변진섭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변진섭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2호	근저 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중구통일로120 (충청로1가)인천지점	106,800
3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박영미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박영미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3호	근저 당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75 (동인천지점)	24,000
3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황광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황광순	인천남동구간석동938-1 어울림마을아파트113 -301				
3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창운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5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창운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5호				
3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정훈 최경란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6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정훈 최경란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6호				
3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여찬웅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7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여찬웅	인천남동구구월로1244 -10중앙아파트201호				
3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장혜영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3동508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장혜영	고양시일산동구위시티4 로79,309동503호(식사 동, 위시티일산블루밍3 단지)	근저 당권	교보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중로 1 (중로1가)	84,000
4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노상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노상순	인천남동구경원대로746 (주안동)	근저 당권	삼성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서초구서초대로74길1 1 (서초동)	129,600
4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상욱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이상욱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2호	근저 당권	남동농협 협동조합	인천남동구만수동1014-1 (신만수지점)	115,800
4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숙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이숙자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3호	근저 당권	삼성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서초구서초대로74길1 1 (서초동)	103,660
4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가현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이가현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104호	근저 당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중구통일로120(충정 로1가)인천가좌지점	42,000
4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홍유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홍유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1호	근저 당권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서울중로구공평동100 (소매여신운영부)	96,000
4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오건영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오건영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2호	근저 당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문정동지점)	69,600
4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재문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재문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3호				

4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윤영일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윤영일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204호	근저 당권	우리은행	서울중구소공로51(회현동 1가)가산아이티금융센터	97,900
4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오양석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오양석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1호	근저 당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구월북지점)	45,200
4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박한희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박한희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2호	근저 당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만수동지점)	69,600
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준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준규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3호	근저 당권	우리은행	서울중구소공로51(회현동 1가)의왕지점	96,800
5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조영성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조영성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304호				
5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위이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위이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1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남동구장승로28(만수동) 신만수지점	96,000
5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춘희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이춘희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2호				
5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이용희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배진모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3호				
5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신은용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신은용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404호				
5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해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1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해님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1호				
5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송형중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2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송형중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2호				
5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김길용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3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김길용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3호	근저 당권 압류	국민은행 동대문 세무서	서울중구남대문로84(을지 로 2가)(구월북지점)	138,000
59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1-10번지	대	51.45	51.45	아파트	준주거 지역	나현목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4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2동/ 지하1층~5층	65.46	나현목	인천남동구구월로265길 12-3, 우정@4동504호	근저 당권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남동구장승로28(만수동) 신만수지점	24,000

※ 첨부서류: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8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인천남동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인천남동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및 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870-524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년1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인천남동소방서 서창2지구 신설119안전센터 신축공사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1,140m²
 - 건축규모: 982.52m²(1층:607.12m², 2층:375.40m², 옥탑:67.43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0 (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8.1.30. ~ 2019.4.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 번 (서창동)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670	대	1,140	1,14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0				
소 계				1,14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9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2018. 2. 2.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2018년2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통·반 구역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8.2.2.

동명	구분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78	3,740	3	18	681	3,758	
구월1동		38	195	0	0	38	195	
구월2동		41	211	0	0	41	211	
구월3동		42	220	0	0	42	220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5	163	0	0	25	163	
간석3동		42	217	0	0	42	217	
간석4동		39	207	0	0	39	207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1	156	0	0	31	156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5	211	0	0	35	211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58	274	3	18	61	292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1	0	0	33	211	
논현고잔동		33	184	0	0	33	184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20호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 따라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 2017-269호)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추진위원회명: 연와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사업구분: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1번지 일원(주안로235번길 22)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일 : 2007. 10. 22.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취소일 : 2018. 02. 02.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21호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 따라 간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 2017-316호)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조 합 명: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사업구분: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6번지 일원(석정로566번길 9-10 일원)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일 : 2006. 11. 24.
5. 조합설립인가일 : 2009. 04. 20.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인가 취소일 : 2018. 02. 02.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22호

간석초교주변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인가 취소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4항에 따라 간석초교주변용천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17호)되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간석초교주변용천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2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간석초교주변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조합명: 간석초교주변용천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사업구분: 주택재개발사업
3.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50번지 일원(당좌로35번길 18-11)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일 : 2010. 02. 12.
5. 조합설립인가일 : 2010. 07. 29.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인가 취소일 : 2018. 02. 02.